

ALL LIVE HANGUK Party



한국국민당

당헌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당 원	4
제 3 장. 대의기관	6
제 1 절. 전당대회	6
제 2 절. 전국대표회의	8
제 4 장. 집행기관	11
제 1 절. 당대표와 최고위원	11
제 2 절. 최고위원회	13
제 3 절. 당무위원회	15
제 4 절. 당무집행기구	17
제 5 절. 윤리심판원	18
제 6 절. 중앙교육연수원	18
제 7 절. 중앙정책위원회	19
제 8 절. 중앙회의	20
제 9 절. 중앙위원회	22
제 10 절. 상임고문 · 고문 · 중앙국책자문위원회 · 중앙재정자문위원회	34
제 11 절. 정책연구원 및 특별기구	35
제 12 절.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36
제 13 절. 지방자치 협의회 연석회의	36
제 14 절. 시 · 도당	36
제 5 장. 원내기구	39
제 1 절. 의원총회	39
제 2 절. 원내대표	40
제 3 절. 원내정책위원회	41
제 6 장. 선거관리	44
제 7 장 .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45
제 8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47
제 9 장. 예산과 회계	52
제 10장. 당헌개정	54

【2015년 6월 26일 제정】
【2020년 3월 16일 개정】
【2020년 8월 6일 개정】
[2022년 1월 26일 개정]
[2024년 2월 2일 개정]
[2024년 2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 ① 당의 명칭은 **단군주의에 기반한 <한국국민당>**(이하 약칭 국민당)으로 바꾼다.
- ② 한국국민당은 국민의 폭 넓은 기반을 통한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③ 한국국민당은 고조선의 후예(後裔)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法統)과 항일정신(抗日精神)을 계승한다.

제 2 조(목적)

한국국민당은 “단군주의(천부경)”의 현대적 재창조인 <평화철학(정도론正道論·양미론兩未論-창조적 성장론)>과 “공생주의”의 대표적 실천방안인 <박정희 경제학>을 중심으로, 과거의 왕정(전제군주제)과 미래에 완성될 민주주의 4.0을 위한 과정적 사회체제인 공민(共民)·왕민(王民) 주의를 통하여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성취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국민당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과 ‘세상으로 나아가 도리로 교화 한다’는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인본주의(人本主義), 그리고 현세주의적(現世主義的) 윤리의식 속에 잠재된 철학사상의 특질을 통합하여 한민족의 가치의식(價値意識)

으로 다시 살려내고자 「홍익인간(弘益人間)」이념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복지와 정의 등을 사회적 통념의 재인식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본질적인 삶과 일맥상통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정립시키고 이를 계승하여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키워내고, 정치적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사고(思考)로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이념과 신국가사회경제론을 바탕으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三均主義 : 정치적 · 경제적 · 교육적 균등)를 추구함으로써 민본(民本) 정치(民本政治)를 추구한다.

또한 대한제국의 장자권을 이어받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대한제국 시대의 영토로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여 후대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며, 반성(反省)과 성찰(省察)을 통해 반만년 역사를 다져온 시대적 정신을 통찰(通察)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국민들과 더불어 꿈꿀 수 있는 민본(民本) 추구를 통한 민본(民本)을 위한 민본(民本)에 의한 민본(民本)을 위한 정치를 속히 실현하고자 '정의 · 소통 · 번영 · 동북아 대연방 대통일'을 한국국민당의 시대적 기저와 목적으로 삼는다.(개정 2020.3.16.)

제 3 조(구성)

한국국민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은 대한민국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요건)

- ①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은 지방당원은 소속 시·도당에, 정책당원은 중앙당에 탈당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당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시·도당이 없거나 사
고 당부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입당·탈당·복당·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구분)

- ① 당원은 소속에 따라 지방당원, 정책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권리
당원,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을 일반당원이라 한다.
- ② 권리당원의 경우 당규에 따라 대표당원을 둘 수 있다.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 조(권리 및 의무)

-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선출 선거의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8.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②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7.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 ③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
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

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로서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④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조(당원의 참여기회 실현)

- ① 각종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및 청년당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여성 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한다.
다만, 1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어촌 등 취약지구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100분의 30이상 포함하는 경우 노인, 청년, 대학생, 장애인, 다문화, 자유귀순민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르게 배분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 조(당원자격 심사위원회)

-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조(상벌)

-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2020년 3월 16일 개정】

제 3 장 대의기관

제 1 절 전당대회

제 11 조(개최 및 구성)

- ①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전당대회와 임시전당대회를 둔다.(개정 2020.03.16.)
1. 정기정당대회는 당의창당일인 2015년 6월 26일부터 매 2년 마다 같은 월에 개최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정한 장소 및 일시는 대회 5일전에 전당대회 의장이 공고한다. 단 사정에 따라 1개월 전에 할 수 있다.(신설 2020.03.17.)

2.임시 전당대회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최고당무회의의 요구로 개최하고 장소 및 일시는 전당대회 의장이 공고 한다.(신설 2020.03.17.)

② 전당대회는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0.03.16.)

1. (삭제 2020.03.16.)
2. (삭제 2020.03.16.)
3. (삭제 2020.03.16.)
4. (삭제 2020.03.16.)
5. 시·도당 위원장
6. (삭제 2020.03.16.)
7. 당 소속 국회의원
8. (삭제 2020.03.16.)
9. (삭제 2020.03.16.)
10. (삭제 2020.03.16.)
11. (삭제 2020.03.16.)
12. (삭제 2020.03.16.)
13. (삭제 2020.03.16.)
14. (삭제 2020.03.16.)
13. (삭제 2020.03.16.)
15. (삭제 2020.03.16.)
16. (삭제 2020.03.16.)
17. (삭제 2020.03.16.)
18. (삭제 2020.03.16.)
19. (삭제 2020.03.16.)
20. (삭제 2020.03.16.)

21. 명예대표, 명예총재,

중앙분과위원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 중앙위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 및 각 시·도당 운영위원장, 중앙지방자치위원장, 중앙인재영입위원장, 중앙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 재정위원장, 직능분과위원장, 홍보분과위원장,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인권분과위원장, 국제교류분과위원장, 노동분과위원장, 장애인분과위원장, 재외국민분과위원장, 여성분과위원장, 청년분과위원장, 대학생분과위원장, 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장, 문화관광분과위원장, 체육발전분과위원장, 다문화분과위원장, 자유귀순민분과위원장,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노장정경대책분과위원장, 실버대책분과위원장,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장, 해양도시분과위원장, 국제외교분과위원장, 역사분과위원장, 영토분과위원장, 통일분과위원장, 종교분과위원장, 교육연수분과위원장(삭제 2020.03.16.)

22. 공생당 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원(삭제 2020.03.16.)

23. 각 시·도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삭제 2020.03.16.)

24.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삭제 2020.03.16.)

③ 제1항20호 내지 제1항21호 내지 제1항22호의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 ④ 제1항 제22호의 대의원은 전당대회 3개월 전까지 입당한 대표당원 10명당 1명씩 배정하되, 지역, 직능과 여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한다.
- ⑤ 전당대회 대의원 결원시 선임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 25. 고문 및 자문의원(신설 2020.03.16.)
- 26. 최고당무회의의원(신설 2020.03.16.)
- 27. 당 소속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신설 2020.03.16.)
- 28. 중앙당 및 시, 도당 임직원(신설 2020.03.16.)
- 29. 시·도당 당협위원회 위원장(신설 2020.03.16.)
- 30. 당헌에 규정된 각 분과위원장(신설 2020.03.16.)
- 31.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10인(신설 2020.03.16.)

③ 전당대회에는 의장1인, 부의장2인을 두고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12 조(책임 및 권한)

-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 3.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선출
 - 4.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 5. 기타 주요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② 전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대표회의가 대행할 수 있다.

제 13 조(소집)

- ① 정기 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전당대회는 상임전국대표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개월 이내에 전당대회의장이 소집하여야 하고, 의장이 사유로 인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서로 소집하며,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 ③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조 (임원)

-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국대표회의 의장이, 전당대회 부의장은 전국대표회의 부의장이 된다.
- ③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5 조(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 ① 당무위원회는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에 국한한다.
단,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전국대표회의

제 17 조(구성)

전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대표회의를 두며, 그 정수는 1,0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당대표최고위원
2. 최고위원(원내대표, 중앙정책위의장, 원외정책위의장, 원내 정책위의장 포함)
3. 당 소속 국회부의장
4. 전당대회 의장·부의장
5. 상임고문 및 고문
6. 윤리위원장
7. 중앙회의 의장·부의장 및 산하 각 의장·부의장
7. 상임전국대표회의 의장·부의장
8. 상임전국대표위원
9. 중앙정책위원회 위원
10. 정책연구원 위원
11. 당무위원회 위원
12. 지방자치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
13. 사무총장,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14. 중앙위원회 의장
15. 시·도당 위원장
16. 당 소속 국회의원
17.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대표위원
18. 중앙당 각종위원회 위원장
19.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 중앙회의 의장·부의장
21. 시·도당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22. 중앙분과위원회
23. 전국가정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24. 전국직능조직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25. 전국생활조직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26. 전국생활권익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27.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28. 전국청년위원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29. 전국대학생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30. 전국다문화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31. 전국노약·노장층생활경제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32.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
33. 전국농어민생활경제대회 선출 전국대표위원위원
34. 전국노동대회선출 전국대표위원
35.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1급 당직자
36. 당 소속 자치구·시·군 자치단체장
37.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위원
38. 당 소속 자치구·시·군 의회 대표위원

제 18 조(책임 및 권한)

- ① 전국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 기본정책의 채택과 개정
 2. 전당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기능의 대행
 4. 최고위원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5. 전당대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투표
 7.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 ② 전국대표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9 조(소집 및 의사)

- ① 전국대표회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전국대표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3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 ③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표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위원이 이를 소집한다.

- ④ 전국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 20 조(의장단)

- ① 전국대표회의 의장은 전국대표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의장 2인은 전국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전국대표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시 . 도당 위원장 외에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다.
- ③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2020년 3월 16일 개정】

제 4 장 집행기관

제 1 절 당대표와 최고위원

제 21 조(지위와 권한)

- ① (삭제 2020.03.16.)
- ② (삭제 2020.03.16.)
- ③ (삭제 2020.03.16.)
- ④ (삭제 2020.03.16.)
- ⑤ (삭제 2020.03.16.)
- ⑥ (삭제 2020.03.16.)
- ⑦ (삭제 2020.03.16.)
- ⑧ (삭제 2020.03.16.)
- ⑨ (삭제 2020.03.16.)
- ⑩ (삭제 2020.03.16.)
- ⑪ (삭제 2020.03.16.)
- ⑫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03.16.)
 - 1.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신설 2020.03.16.)

2. 중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신설 2020.03.16.)
3. 최고위원과 당무협의 집행(신설 2020.03.16.)
4. 중요 당직자 추천과 임명(신설 2020.03.16.)
5. 대외기관의 위임사항 처리(신설 2020.03.16.)
6. 기타 당무처리(신설 2020.03.16.)

⑬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03.16.)

1. 최고 당무회의 위원(신설 2020.03.16.)
2. 대표최고위원과 당무 협의(신설 2020.03.16.)
3. 대표최고위원 유고시 서열에 따라 대행(신설 2020.03.16.)
4. 기타 중요당직자와 당무협의(신설 2020.03.16.)

제 22 조(대표위원, 최고위원 선출)(개정 2020.03.16.)

- ① (삭제 2020.03.16.)
- ② (삭제 2020.03.16.)
- ③ (삭제 2020.03.16.)
 1. (삭제 2020.03.16.)
 2. (삭제 2020.03.16.)
- ④ (삭제 2020.03.16.)
- ⑤ (삭제 2020.03.16.)
- ⑥ 대표최고위원은 과반참석대의원의 최다 득표자로 선출 한다.(신설 2020.03.16.)
- ⑦ 최고위원 선출직 3명은 과반참석 대의원 득표 중 다수로 선출 한다.(신설 2020.03.16.)
- ⑧ 임명직 최고위원2명(여성 포함)은 최고 당무회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 한다.(신설 2020.03.16.)
- ⑨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단, 대통령후보로 출마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년 전에 사임해야 하며, 추천에 의한 추대일 경우에도 포함한다.(신설 2020.03.16.)

제 23 조(선출직 최고위원)

- ① 선출직 최고위원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2위에서 5위까지의 득표자로 한다. 다만 5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 ② 대표위원은 선거의 후보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잔여 정원은 전국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이 임명한다.
-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임기)

대표위원과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 정기 전당대회에서 대표위원 및 최고위원이 선출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대표위원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 ① 다만, 대표위원과 최고위원이 심각한 해당행위를 할 시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에 상관없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해임 건을 상정하고 전국전당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03.16.)
- ② 윤리위원회의 심판청구는 당규의 징계청원 절차에 따른다.(신설 2020.03.16.)

제 25 조(권한대행)

대표위원의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6 조(자문 및 보좌기관)

- ① 당무에 관한 대표최고위원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국책에 관한 대표최고위원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중앙국책자문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 재정에 관한 대표최고위원의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중앙재정자문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의 상임고문으로 위촉하고 상임고문이 된 대통령후보출마예정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⑤ 대표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대표가 임명하는 대표위원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을 둘 수 있다.
- ⑥ 대표위원의 자문 및 보좌기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최고당무회의(개정 2020. 03.26.)

제 27 조(구성)

- ① 당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 당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최고 당무 회의를 둔다.(개정 2020.03.16.)
- ② 최고 당무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0.03.16.)
 - 1. 대표최고위원
 - 2. 원내대표
 - 3. 제23조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삭제 2020.03.16.)
 - 4. 사무총장
 - 5. (삭제 2020.03.16.)

- 6. (삭제 2020.03.16.)
- 7. (삭제 2020.03.16.)
- 8. (삭제 2020.03.16.)
- 9.최고위원
- 10.전당대회회장(신설 2020.03.16.)
- 11.정책의장(신설 2020.03.16.)
- ③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최고위원으로 한다.

제 28 조(책임 및 권한)

- ①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전국대표회의와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 3. 공동 대표위원등 대표위원 선출 관련 심의·의결
 - 4.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결
 - 5.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 6. 전국대표회의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 7.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 8.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 9.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 10.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 또는 사고위원회 판정
 - 11.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 29 조(소집 및 의사)

-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 상임고문, 정책연구원의 원장, 중앙국책자문위원장, 중앙재정자문위원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최고위원회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0 조(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78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31 조(상임고문과 고문)

- ① 대표위원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직 대표위원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대표위원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상임고문과 고문은 대표위원과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상임고문 및 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전국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 32 조(중앙분권최고위원회)

- ① 중앙당에 설치하는 중앙분권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시·도당위원장
 - 2. 당무위원회 의장
 - 3. 중앙정책위의장
 - 4. 사무총장
 - 5. 중앙위원회 운영위원장
- ② 중앙분권최고위원회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중 1인을 선임하며, 부의장 및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중앙분권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임한 주요 안건의 처리
 - 2. 최고위원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 3.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처리
 - 4. 당내 주요 현안의 심의·의결
 - 5.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 요구
 - 6.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 7.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 3 절 당무위원회

제 33 조(구성)

- ① 전당대회의 수입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를 둔다.
- ②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최고위원회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당무위원회에는 당무 혁신국과 당무 감사국을 두며, 부의장이 담당한다.
- ④ 부의장은 3인으로 하고, 수석부의장 1인을 둔다.
- ⑤ 당무위원회의 위원은 전국대표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 1. 대표최고위원
 - 2. 최고위원
 - 3. 원내대표
 - 4. 사무총장
 - 5. 전국대표회의 의장·부의장

6. 상임전국대표회의 위원장
 7. 전당대회 의장
 8. 정책위원회 의장
 9.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
 10. 시·도당 위원장
 11.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12. 원외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회의 선임 원외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13.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14. 전국여성대회 선출 전국위원 5인
 15. 전국 대학생대회 선출 전국위원 5인
 16. 전국청년대회 선출 전국위원 3인
 17. 전국장애인대회 선출 전국위원 3인
 18. 전국 노장층 및 실버대회 선출 전국위원 7인
 19. 전국 다문화인 대회 선출 전국위원 3인
 20. 전국 자유귀순민 대회 선출 전국위원 3인
 21.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22. 당 소속 자치구·시·군 의회 전국 대표의원
- ④ 당무위원회의의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 ⑤ 당무위원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4 조(책임 및 권한)

- ① 전국대표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강령·기본정책·개정안의 발의
 2.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당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4.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5. 전국대표회의의 소집 요구
 6.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결
 7.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
 8. 전국대표회의 및 중앙회의·중앙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9.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10.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처리
 11.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상벌안의 확정
 12.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
 13.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의 승인
 14. 조직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의 구성

15.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소집 요구
16.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17. 당무 활동 보고 요구
18.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19.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 35 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 ① 당무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소집한다.
- ④ 상임고문 및 고문은 당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전국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 4 절 당무집행기구

제 36 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총국, 전략기획본부, 홍보기획본부,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 37 조(당무집행기구)

- ① 중앙사무총국에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를 관장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둔다.
- ② 전략기획본부에 주요 정치현안 및 전략을 관장하는 전략기획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기획 위원장 등을 둔다.
- ③ 홍보기획본부에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의 홍보를 관장하는 홍보 기획 본부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분부장, 대변인 등을 둔다.
- ④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및 부분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당 사무를 수행하며, 소관 부서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중앙사무총국과 본부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8 조(임명)

- ① 사무총장·전략기획본부장·홍보기획본부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②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부분부장 등은 소관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39 조(중앙당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 ① 중앙당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 ②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각급 위원회(급)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 ③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관련 법인 및 국회직 등의 실·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 ④ 사무직 당직자는 대표위원이 인사위원회의 제청과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면한다. 다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중앙당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0 조(사무총국당직자 인사위원회)

-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총국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총국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사무총국 당직자는 사무총국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 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대표위원이 임명한다.
- ③ 사무총국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총국 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절 윤리심판원

제 41 조(구성)

- ①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윤리심판원을 둔다.
- ② 윤리심판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윤리심판원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이 임명한다.
- ④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을 윤리심판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이 임명한다.
- ⑤ 윤리심판원에는 권역 당규율위원회, 권역 감찰위원회, 당징계위원회 등을 두며, 위원회의 총괄 관리는 부원장이 담당한다.
- ⑥ 윤리심판원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2 조(책임 및 권한)

윤리심판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비리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한다.
에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의결한다.
5. 기타 윤리심판원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을 관리한다.

제 6 절 중앙교육연수원

제 43 조(구성 및 기능)

-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을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 ② 중앙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 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중앙연수원에 교육연수위원회를 둔다.
- ④ 중앙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절 중앙정책위원회

제 44 조(구성)

-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중앙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원외정책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 ④ 중앙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 ⑤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부조화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중앙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5 조(책임 및 권한)

- ① 중앙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민원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 ② 원외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원외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3호의 결과는 원내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중앙정책위원회 의장 등)

- ①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중앙정책위원회의 주재
 2. 원외 및 원내 정책위원회의 당 정책 및 당정 협의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3. 중앙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원외정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 ③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최고위원의 궐위 시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
- ④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 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시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8 절 중앙회의

제 47 조(구성 및 기능)

- ① 당의 올바른 나아갈 길을 정립하고, 선결해야할 정치적 현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회의를 둔다.
- ② 중앙회의는 최고위원회를 보좌하며, 선출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중앙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8 조(임원)

- ① 중앙회의에 의장 1인과 수석부의장 1인, 5인 이내의 부의장(시·도당연합회 회장 대표 포함)을 둔다.
- ② 의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명한다.

- ③ 수석부의장을 포함한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제 49 조(중앙회의 운영위원회)

- ① 중앙회의의 수임기관으로 중앙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회의는 필요한 경우 기획연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중앙회의의 운영위원회와 기획연구 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0 조(국정자문회의)

- ① 국정 및 주요 당무에 대한 자문, 각계 직능 분야와의 협력 및 민의 수렴, 국민에 대한 당론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국정자문회의를 둔다.
- ② 국정자문위원회에 의장 1인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명한다.
- ③ 국정자문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국정자문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1 조(영토주권국민회의)

- ① 외국의 실효적지배에 있는 국가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영토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토주권국민회의를 둔다.
- ② 영토주권국민회의에 의장 1인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③ 영토주권국민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영토주권국민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2 조(통일준비국민회의)

- 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방정책 추진 및 동북아 공영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통일준비국민회의를 둔다.
- ② 통일준비국민회의에 의장 1인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통일준비국민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통일준비국민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3 조(국가안전국민회의)

- ①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국가안전국민회의를 둔다.
- ② 국가안전국민회의에 의장 1인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국가안전국민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국가안전국민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4 조(해양정책국민회의)

- ① 해양강국을 위한 정책의 강화로 태평양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해양정책국민회의를 둔다.
- ② 해양정책국민회의에 의장 1인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해양정책국민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해양정책국민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5 조(민주화·경제 재평가국민회의)

- ① 과거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재평가로 올바른 역사관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민주화경제평가국민회의를 둔다.
- ② 민주화경제평가국민회의에 의장 1인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③ 민주화경제평가국민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민주화경제평가국민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6 조(DMZ 평화경제구역국민회의)

- 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편으로 비무장 지대에 평화경제구역을 설치하고 남북간 이산가족들이 통일의 초석으로 공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DMZ평화경제구역국민회의를 둔다.
- ② DMZ평화경제구역국민회의에 의장 1인과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DMZ평화경제구역국민회의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DMZ평화경제구역국민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 절 중앙위원회

제 57 조(구성 및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② 중앙위원회는 제17조제 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8 조(중앙위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① 중앙위원회의 수임기관으로 중앙위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위원회는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직능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③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9 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2.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3. 상임전국위원
 4. 상임고문, 고문
 5. 각 분과위원장
 6. 지도위원, 자문위원, 총 간사
 7.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8. 시·도당 연합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9. 국회의원선거구별 당협위원장, 당협부위원장, 간사
 10. 각 분과위원회 위원
 11. 시·도당 연합회 위원 및 지회 위원
- ②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임원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10호의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 중앙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단, 제8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 후 중앙위원회 의장이 추천한다.

제 60 조의1(재정위원회)

- ① 건전한 당 재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④ 재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지출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 ⑤ 제4항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⑥ 제4항제1호의 당 운영자금의 편성을 위한 예산내역은 각급 당기구가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재정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 받은 당 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⑧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재정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편성·집행·당비납부 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 ⑩ 재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국이 담당한다.
- ⑪ 재정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0 조의2(지방자치위원회)

- ①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정책개발과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해 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부위원장을 두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③ 지방자치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④ 지방자치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60 조의3(인재영입위원회)

-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발굴과 인재영입에 관련된 업무와 각종 선거 후보자의 발굴 및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유대강화, 협조 및 재야단체 및 관련 이익집단과의 원활한 교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둔다.
- ② 인재영입위원회는 인재영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인재영입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인재영입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⑤ 영입된 인재는 각종 선거 공직후보자추천, 당직 및 당원협의회 구성에 있어 제6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⑥ 인재영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⑦ 인재영입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60 조의4(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회)

- ① 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

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당내 외 인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최고위원회의의 위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역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고, 위원장, 단장 각각 1인과 각각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역시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고, 위원장, 단장 각각 1인과 각각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각각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再議)요구권을 가진다.
- ⑥ 제5항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⑦ 중앙당 및 시·도당에 각급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은 각각 중앙당 및 시·도당 비례대표공천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⑨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⑩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61 조의1(직능분과위원회)

- ① 직능 관련 정책개발 및 기획, 직능조직의 확대 및 관리를 위해 직능분과위원회를 두며, 전국 다수의 직능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직능분과위원회는 직능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직능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직능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직능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직능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직능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홍보분과위원회)

- 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 및 당 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홍보분과위원회는 홍보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홍보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홍보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홍보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홍보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홍보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3(대외협력분과위원회)

- ①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대외협력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외협력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대외협력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대외협력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대외협력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4(인권분과위원회)

- 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수립, 인권신장을 위한 당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인권관계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을 위하여 인권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인권분과위원회는 인권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인권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인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인권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

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인권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인권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5(국제교류분과위원회)

- ① 당의 국제교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교류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제교류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국제교류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국제교류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국제교류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6(노동분과위원회)

- 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 각종 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등을 위해 노동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노동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노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노동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노동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노동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7(장애인분과위원회)

- ① 장애인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장애인분과위원회는 장애인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장애인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장애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장애인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장애인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장애인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의조8(재외국민분과위원회)

- ①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 지지도 확산과 해외 교민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재외국민분과위원회는 재외국민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외국민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재외국민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재외국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재외국민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재외국민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9(여성분과위원회)

- ① 여성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여성분과위원회는 여성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여성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여성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여성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여성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0(청년분과위원회)

- ① 청년층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청년정책 수립 및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청년분과위원회는 청년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청년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청년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청년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청년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1(대학생분과위원회)

- ① 대학생의 자치활동 지원 및 교류활성화, 대학생 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생분과위원회는 대학생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학생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대학생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대학생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대학생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대학생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2(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회)

- ①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문화예술발전위원회는 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문화예술발전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3(문화관광분과위원회)

- ① 문화관광의 발전과 문화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문화관광분과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

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문화관광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문화관광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4(체육발전분과위원회)

- ① 체육발전과 체육발전정책 수립을 위해 체육발전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체육발전분과위원회는 체육발전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체육발전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체육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체육발전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체육발전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체육발전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5(다문화분과위원회)

- ① 다문화 가족과 자녀 지원에 대한 정책수립 등을 위해 다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다문화분과위원회는 다문화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다문화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다문화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다문화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다문화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다문화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6(자유귀순민분과위원회)

- ① 탈북 자유귀순민의 정착, 지원 등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해 자유귀순민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자유귀순민분과위원회는 자유귀순민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 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자유귀순민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자유귀순민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자유귀순민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자유귀순민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자유귀순민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7(사회복지분과위원회)

- ①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복지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사회복지분과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 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사회복지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8(노장정경대책분과위원회)

- ① 61세부터 70세까지를 노장층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정치참여와 노장정책 수립, 기타 노장세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장정경세대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노장정경세대분과위원회는 노장정경세대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노장정경세대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노장정경세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노장정경세대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노장정경세대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노장정경세대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19(실버사회분과위원회)

- ① 실버세대의 사회참여와 실버정책 수립, 기타 실버사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버사회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실버사회분과위원회는 실버대책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 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버사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실버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실버사회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실버사회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실버사회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0(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회)

- ①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예방,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회는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재해안전대책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1(해양도시분과위원회)

- ① 3면이 바다인 국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고 해양이 인접한 도시들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도시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해양도시분과위원회는 해양도시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 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해양도시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해양도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해양도시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해양도시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해양도시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2(국제외교분과위원회)

- ①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국제외교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국제외교분과위원회는 국제외교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 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국제외교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국제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 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국제외교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국제외교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국제외교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3(역사분과위원회)

- ① 역사의 정립과 역사 정책 수립을 위해 역사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역사분과위원회는 역사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역사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역사분과위원회위원장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역사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역사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역사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4(영토분과위원회)

- ① 국가의 영토를 수호하고, 민족적 자존감의 향상과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토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영토분과위원회는 영토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영토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영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영토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영토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영토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5(통일분과위원회)

- ① 남북통일 및 통일 후의 정책수립을 위해 통일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통일분과위원회는 통일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통일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통일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통일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통일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6(종교분과위원회)

- ① 종교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종교인들의 화합을 통한 국민들의 이념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종교분과위원회를 두며, 종교별로 세분화 할 수 있다.
- ② 종교분과위원회는 종교분과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종교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종교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종교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종교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종교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1 조의27(교육연수분과위원회)

- ① 당의 이념 정립과 사회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교육연수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교육연수분과위원회는 교육연수분과위원회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육연수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둔다.
- ④ 교육연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⑤ 교육연수분과위원회는 제17조제17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을 선출을 주관하며, 선출방식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⑥ 교육연수분과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분과국이 담당한다.
- ⑦ 교육연수분과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절 상임고문 · 고문 · 중앙정책자문위원회 · 중앙재정자문위원회

제 62 조(상임고문과 고문)

- 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전직 대표최고위원이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대표최고위원은 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상임고문과 고문은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원회 등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63 조(중앙정책자문위원회)

- 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원로를 중앙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중앙정책자문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이명하는 당내 · 외 인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정책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 ④ 중앙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정현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중앙정책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건의한다.
- ⑤ 중앙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4 조(중앙재정자문위원회)

- ① 대표최고위원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재정총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중앙재정자문위원회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재정자문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 중앙재정자문위원회는 중앙당의 재정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 건의한다.
- ⑤ 중앙재정자문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 절 정책연구원 및 특별기구

제 65 조(정책연구원)

- ① 정책연구원은 당의 분과위원회간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정책조정회의를 소집한다.

- ② 정책조정회의는 정책연구원 원장 1인과 수석부원장 및 약간의 부원장을 두며, 정책조정위원장, 분과위원장을 대표최고위원이 정책위원중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관 분야의 분과위원회는 정책조정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 ④ 정책연구원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6 조(정책연구원 부원장)

- ① 정책연구원에는 정책연구원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정책연구원원장이 궐위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원장, 정책조정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7 조(기타 특별기구)

- ①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 ③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의 및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청년(여청)정치발전기금을 구성·운영한다.
- ④ 대표최고위원은 여성·청년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두며, 여성이 50%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 ⑤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 ⑥ 위 제3항 내지 제4항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 절 국회의원 및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

제 68 조(구성 및 기능)

-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 절 지방자치협의회 연석회의

제 69 조(구성 및 기능)

- ① 당무 전반에 관한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의견수렴을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시·도·구·군 의원 포함)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둔다.

- ②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절 시·도당

제 70 조(시·도당대회의 구성)

-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지역유권자수의 0.05% 이내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운영위원
 3. 관할 당소속 국회의원
 4. 당소속 시·도지사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6.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중앙위원회 시·도당 주요 임원
 9. 당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0.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1. 직역별로 선출된 직능대표
 12.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 ② 시·도당대회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1 조(시·도당대회의 책임과 권한)

-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전당대회대의원의 선출
 2. 제17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전국대표회의 위원 선출
 3. 시·도당 위원장 선출
 4. 공직후보자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5.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② 시·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소속 국회의원
 3. 당소속 시·도지사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지역대표 전국위원
 6. 당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7. 시·도당 각종 상설위원회 위원장
8.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
9. 시·도의회 대표의원
10. 당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 ③ 시·도당대회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겸임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2 조(시·도당위원장)

- ① 시·도당에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 약간인 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단,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도당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시·도당 위원장은 전국대표위원회 의장, 부의장, 시·도당대회 의장, 지역구당원협의회장 이외에 다른 당직을 겸직할 수 없다.
- ⑤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3 조(당원협의회)

-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 ② 당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 ③ 대표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 ④ 당원협의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4 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 ①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당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 ③ 시·도당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④ 시·도당의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제 5 장 원내기구

제 1 절 의원총회

제 75 조(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 76 조(의원의 의무와 지위)

- ①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 77 조(책임 및 권한)

- ① 의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 및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의 선출
 4.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5.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의 심의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7.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8.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정당법 제33조 규정)
9.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제 78 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 79 조(소집)

- ①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소집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 80 조(회의)

-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5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 81 조(의결정족수)

-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 ⑤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 82 조(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 ①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 ②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 ③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원내대표

제 83 조(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 84 조(선출 및 임기)

-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내대표에 의한 불신임 투표를 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제 85 조(책임 및 권한)

- ①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5.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 86 조(원내부대표 등)

-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7 조(원내대책위원회)

- ① 국회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 대표가 지명하는 7인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 ④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원내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 및 실무기구를 둔다.
- ⑥ 원내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절 원내정책위원회

제 88 조(구성)

-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의원총회 산하에 원내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원내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원내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④ 원내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 ⑤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내대책위원회의 또는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89 조(책임 및 권한)

- ① 원내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 6. 민원업무의 처리
 -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 ② 원내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원내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고

원외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중앙정책위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0 조(원내정책위원회 의장 등)

- ①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원내정책위원회의 주재
 -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3. 당정협의업무 총괄·조정
 - 4. 원내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 ③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동반출마 당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궐위 시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연 사퇴한다.
- ④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조정 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 대표가 임명한다.
- ⑤ 원내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간사가 원칙적으로 겸임하며,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 ⑥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의 궐위시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제 6 장 선거관리

제 91 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국회의장 및 부의장·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 이하의 부위원장 및 약간 명의 외부 인사를 포함해 당규로 정하는 수의 위원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선거관리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2 조(선거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의 부정선거를 인지한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3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④ 선거부정의 종류와 제재방법, 경선 불복의 종류 및 조사와 심의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제 7 장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제 93 조(후보자 선출)

- ①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당선자는 국민참여경선인단 유효투표결과 80%(거부투표 삭감 후), 여론조사결과 2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 ③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④ 제3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하며 동률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 ⑤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4 조(국민참여경선인단 구성 등)

- ①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선거인단은 유권자수의 0.5%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대의원 선거인
 2. 당원 선거인
 3.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선거인
- ② 당헌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 제1호는 국민 참여 경선인단 총수의 8분의 2, 제2호, 제3호는 8분의3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선거인단은 각각 여성이 30%로 한다.
 -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시·군 복합 당원 협의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 ⑤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한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자치구나 시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지역의 경우 40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의 기초자치 단체 지역은 2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각각의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 해외거주 선거인을 추가할 수 있다.
 - ⑦ 국민 참여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5 조(후보자의 자격)

- ①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단, 제 123조의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 96 조(후보자의 선출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7 조(대선예비후보자등록제)

- ① 대통령선거 240일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 예비후보자등록제를 운영한다.
- ② 대선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당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8 조(후보자의 지위)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제 8 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99 조(후보자 추천)

- ① 당의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1년 이상 당무를 수행한 당원으로서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3인 이상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하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자의 적합성을 평가 한 뒤 중앙당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심의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며,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③ 당대표는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최고 100분지 30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 ④ 공직자 후보(국회의원, 비례대표 제외)는 승자독식의 폐단을 막고, 국정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추천된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선거를 지휘하고, 선거 종료 직후부터는 당선 및 낙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직은 상실된다.
- ⑤ 당선된 공직자 후보(비례대표 제외)는 차기 공천에서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우선추천 대상자가 된다. 다만,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원(비례대표 후보자 포함)은 제외한다.

제 100 조(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 ① 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가관, 민족관, 정체성, 사회성, 당 및 사회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창의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각 공직선거 후보자는 반국가의 반민족 행위자,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자신의 입지 기반만을 위하는 자, 해당행위자 등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 ③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 및 심사 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1 조(공천심의위원회)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후보자추천과 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천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의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및 대표성을 띠는 인사 30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 ③ 중앙당 공천심의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시·도당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이 임명한다.
- ④ 중앙당 공천심의위원회는 다음 1호와 2호를, 시·도당 공천심의위원회는 다음 3호와 4호를 각각 심의대상으로 하며, 공천심의위원회는 심의 결정권을 100분의 70의 지분을 가진다.
 1. 국회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2. 시·도지사
 3. 자치구·시·군의 장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4.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 ⑤ 공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2 조(국민공천심의위원단)

- 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심의를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소속의 국민 공천 심의 위원단을 둔다.
- ② 중앙당 및 시·도당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은 선거해당지역구별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 중 당의 직능 조직별로 안배한 중앙당원 30인으로 각각 구성한다.
- ③ 중앙당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이 임명하며, 시·도당의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이 임명한다.
- ④ 중앙당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은 다음 1호와 2호를,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다음 3호와 4호를 각각 심의대상으로 하며,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은 후보자에 대한 심의 결정권을 100분의 30의 지분을 가진다.

1. 국회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2. 시·도지사
 3. 자치구·시·군의 장 : 우선추천지역
 4.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원 :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후보자
- ⑤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3 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및 연임금지)

-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인 이상 지역 및 직역별로 지구당위원장의 추천 또는 공모를 실시한 후 심사하여 후보자와 그 순위 1위를 정하고, 최종 비례대표 공천심의위원회의 및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이 추천한다.
- ② 중앙당 비례대표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및 국민공천심의위원단으로 참여한 자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략지역에 30%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공직자 선거법 47조③항에 의거하여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⑤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비례대표는 연임을 제한한다.
- 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대상자 선정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출마자가 있을 경우 석패자에 한하여 비례대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104 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지위)

-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2인 이상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이 단수로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위원이 추천한다.
- ②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위원장의 추천한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천심의위원회 및 국민공천심의위원단 전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여 재 추천을 하여야 한다.
-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 ④ 국회의원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역구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 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출, 추천 및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5 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 ① 시·도지사후보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2인 이상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이 단수로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위원이 추천한다.
- ② 해당지역 당협위원장은 후보자 추천 후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추천한 우선추천지역 후보자에 대해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천심사위원회 및 국민공천심의위원단 전체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여 재추천을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6 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

- ①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각각 2인 이상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시·도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이 단수로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 ②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각각 2인 이상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위원이 추천한다.
- ③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심의위원회,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의위원단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위원이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회의의원 후보에는 지역·직능 등의 균형적 안배 및 당내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략지역에 30%를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공직자 선거법 47조③항에 의거하여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여성이 30%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연임금지 조항은 제103조⑤항과 같다.
-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추천지역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최고위원회의에 재의요구를 권고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의의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여 재추천을 하여야 한다.

- ⑤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지역구 당협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 관할 지구당 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⑦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심의위원회와 국민공천심의위원단의 심의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⑧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7 조(우선 추천지역의 선정 등)

-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 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우선 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1. 여성 .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 ③ 우선 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자치구·시·군의 장과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8 조(재 .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 ① 제104조(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제105조(시·도지사후보자의 추천), 제106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제 9 장 예산과 회계

제 109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110 조 (예산과 결산)

- ①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 ② 사무총장은 다음해 회계연도 60일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주요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 ⑤ 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⑥ 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제 111 조 (예산결산 위원회)

-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감사 때마다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하는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 ③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대표최고위원의 추천으로 당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 ⑥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112 조(회계감사)

-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②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 113 조(세부규정)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제 10 장 당헌개정

제 114 조 (개정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 115 조 (의결절차)

- ① 당헌개정안은 대표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또는 전국대표위원회 개최일전 3일까지 공고한다.
- ② 당헌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대표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국대표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6 조 (개정당헌의 공포)

당헌개정이 확정될 때에는 대표최고위원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17 조(당규의 제정 등)

- ① 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 2.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 ④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118 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제 11 장 보 칙

제 119 조(임명직·당직 제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내, 원내의 선출직 이외에 다른 임명직 및 당직 겸임을 최소화한다.

제 120 조(창당취소, 합당과 해산 및 청산)

-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법 제45조를 준용한다.
-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상임전국대표회의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 ③ 청산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소멸 당시의 대표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1인을 두되 소멸 당시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 ③ 잔여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선관위 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1 조(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 ①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

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 책과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법정부책과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2 조(선거대책기구의 지위 등)

- ① 대통령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 ③ 대통령선거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전반을 통할·조정한다.
- ④ 선거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3 조(비상대책위원회)

- ① 대표위원이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전국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최고위원 또는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임전국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 124 조(표결)

-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참석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공인전자 서명을 통한 대의기관 결의시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5 조 (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한 정무직당직자의 임기는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해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015년 6월 26일 제정】
【2020년 3월 16일 개정】
【2020년 8월 6일 개정】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중앙당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당헌은 2020년 3월16일 개정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2020. 3.16.)

이 당헌은 2020년 8월 6일 개정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2020. 8. 6.)

(신설 2020.8.6.)

제 2 조 (당헌개정에 관한 특례)

- 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 또는 전국대표회의 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②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당무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한다.
- ③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 3 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에 의한 당규의 제·개정은 34조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집되는 전국대표회의에서 의장이 선출 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4 조(최초 대표자 및 간부 선출에 관한규정)

- ① 최초의 대표자와 간부는 중앙당 창당대회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 ② 중앙당 창당대회시 개최되는 최초의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최고위원회에 차기에 열릴 전당대회 이전 까지 당무 전반을 위임한다.

제 5 조 (기타 위임)

- ①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가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부칙 외에 적시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최고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